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10호, 2019. 6.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축장에서 가축·식육의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일정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고, 축산물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검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 및 축산물의 이물 발견 시 보고해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원의 배치가 제외되는 작업장(제16조의2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에는 검사관의 가축·사육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확대(제21조제7호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8호)

○ (중전) 닭·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슈퍼마켓 등의 점포 등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개정)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 등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 이물 발견 시 보고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의6)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의 판매제품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